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원대학교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성화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사 및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·담당관 및 행정실의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, 그 설치 범위를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, 학과·학부 설치 원칙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00. ~ 2024. 1. 00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대학원을,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”을 “대학원, 그 밖에 필요한 학사조직(이하 “단과대학 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”를 “단과대학·대학원 등”으로, “학과 및 학부의”를 “그 밖의 학사조직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”을 “등의 장은 총장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자”로, “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”를 “단과대학 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별정직공무원 또는 교수로”를 “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10개의 범위에서”를 “제5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단과대학 등)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,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 수 있다.	제7조(단과대학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대학원, 그 밖에 필요한 학사조직(이하 “단과대학 등”이라 한다)을 ----- -----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 · 대학원 · 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,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 ·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.	②----- 단과대학 · 대학원 등----- ----- ----- ----- 그 밖의 학사조직의 ----- -----.
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· 대학원 · 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	③----- 등의 장은 총장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자----- ----- ----- 단과대학 등----- ----- -----.
제10조(하부조직)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 · 실	제10조(하부조직) ①----- ----- -----

· 본부 · 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 되,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<u>별정직공무원 또는 교수</u> <u>로</u> 임명하고, 교수부장과 처 · 실 · 본부 · 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 여 임명한다. ② (생 략)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 · 사무국 및 처 · 실 · 본부 · 단 등의 하부조직에 <u>10</u> <u>개의 범위에서</u> 과 및 담당관을 둔다.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④ · ⑤ (생 략)	----- ----- ---- <u>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</u> <u>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</u> 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제 5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<u>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-- ---.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063 (044) 203 - 6919